

노쇠해진 전두환 건강 감안 재판 속도 내야

오늘 항소심 4번째 재판 전씨 불출석...민정기 전 비서관 등 증인신문 지역민·5월단체 “진실 규명 서둘러 전두환 사죄 기회 놓치지 않아야”

전두환(90)씨 재판을 속도감 있게 진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부쩍 노쇠해진 전씨의 건강 상태를 감안한 재판 진행을 주문하고 있는 것으로, 사실상 학살의 최종 책임자로 알려져 있는 전씨의 사과·반성을 듣기 위해 41년을 기다려온 희생자들의 바람이 헛되지 않도록 법원이 역사적 비극의 진실을 밝히는 노력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광주지법 형사 1부(부장판사 김재근)는 30일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사자명예 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 대한 재판을 진행한다. 이날 재판은 항소심 시작 이후 4번째 열리는 것

으로, 전씨는 지난 9일 항소심 재판에 처음으로 출석한 이후 재판 불출석 신청을 냈고 법원이 허가해 이번 재판에 나오지 않는다.

법원은 당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변호인을 통해 방어권이 보장된다는 점을 이유로 선고기일 전까지 불출석을 허가했다.

이날 재판에는 전두환 회고록 편집·출판에 관여했다고 하는 민정기 전 청와대 공보비서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열릴 전망이다.

재판부는 지난 재판에서 민씨를 비롯해 5·18 당시 506부대 헬기 조종사 4명을 증인으로 채택해 진술을 듣기로 했었다.

재판부는 특히 검찰과 5월 단체 등을 중심으로 재판 지연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점을 의식한 듯 “증인·중거 신청이 많아지면 하다 못해 일주일에 두번의 공판 기일을 잡을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지역민들과 5월 단체 안팎에서는 이같은 재판부 발언에 주목, 재판을 서둘러줄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근 전씨가 건강 이상 증세를 보여 병원 입원 치료를 받은데다, 지난 재판 출석 과정에서 부쩍 노쇠하고 경호 인력을 부족을 받아 이동하는 등 건강이 좋지 않아 보였던 점을 의식한 조치로 해석된다.

대한민국 현대사의 아픈 진실을 밝히는 데 속도를 높이지 못한다면 80년 그날의 진실과 ‘역사적 단죄’를 위한 재판이 마무리되지 못해 자칫 전씨로부터 반성, 사과도 영원히 듣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다.

1심이 인정한 5·18 헬기사격의 진실을 재차 확인

하고 전씨로부터 진정한 반성과 사죄를 듣겠다는 게 5월 희생자들의 마지막 바람이다. 채택한 증인들에 대한 소환·진술 일정을 앞당기는 등 집중 심리로 판단을 신속하게 내려달라는 주문이다.

이들은 “2심인 항소심 재판도 1심 재판처럼 지연되고 있다”면서 “재판이 전씨에게 끌려가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5월 단체들은 또 “5·18 명령과 그 유족, 광주 시민들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빌어야 한다”며 “전두환은 사죄하고 참회할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촉구했다.

한편, 전씨는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가리켜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군의회가 음주 운전 목격자 제보로 적발

만취 상태에서 차를 몬 장흥군의회 소속 군의원이 경찰에 적발됐다.

장흥경찰은 29일 장흥군의회 소속 A(56)의원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A의원은 지난 27일 오후 4시 40분께 장흥군 관공사에서 장흥읍 순지나들목 인근 교차로까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A 의원은 이날 지인들과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았다가 목격자의 제보 전화를 받은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A의원을 불러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중대재해법 내년 시행 앞두고 효과 못보는 산재사망 줄이기

감축 목표 세웠지만 사고 잇따라 광주·전남 상반기 30명 숨져 지속적인 안전 점검·지도 필요

정부가 경영 책임자 처벌이 불가피한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올해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축 목표치까지 세웠지만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중대재해 예방 컨트론타워를 만들고 지방노동청 산업재해예방 조직을 확대·개편해 지도 감독을 강화했지만 산업재해가 끊이지 않는 등 체감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30일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 등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발생한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474명으로 집계됐다.

올해 분기별 잠정 집계된 산재 사고 사망자는 1분기 238명, 2분기 236명 등으로 200명 넘는 근로자가 분기마다 산재 사고로 목숨을 잃고 있는 셈이다.

정부가 내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세웠던 올해 산재사고 사망자 700명대 감축 목표와는 사뭇 다른 것으로, 이 추세대로라면 올해 산재 사고 사망자는 800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출범 당시 ‘입기 내 산재 사고를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공언했다가 실정을 고려해 목표치를 수정했지만 지난해 882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숨지면서 개선 의지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 노동계 안팎에서 나오는 실정이다.

광주·전남도 비슷한 형편이다. 정의당 강은미(비례) 국회의원은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

료를 인용, 올 상반기 광주·전남에서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는 30명(광주 8명·전남 22명)이라고 집계했다.

정부는 올해가 산재 사망사고 성패를 좌우하는 ‘골든타임’이라는 인식을 갖고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

당장, 고용부가 지난달 중대재해 예방 컨트론타워인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출범했고 광주고용노동청은 산업재해예방 조직을 기존 1개과에서 3개과(광역중대재해관리과, 산재예방지도과, 건설산재지도과)로 확대·개편하고 지도감독을 강화했다.

하지만 7~8월 지역 산업현장에서의 산업재해는 잇따랐다. 지난달 5일에는 해남에서 창호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추락해 숨졌고 지난달 28일에는 곡성에서 작업차를 타고 전기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감전으로 사망했다. 지난 4일에는 여수 한 화학공장에서 전기판넬을 점검하던 노동자가 감전으로 숨졌고 이튿날 여수의 한 매립장 공사현장에서는 노동자가 작업중인 불도저에 부딪혀 사망했다. 지난 20일에는 순천 도로 재포장 공사현장에서 25t트럭에 노동자가 치어 숨졌다.

노동계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 유예·대상제외의 단서(5~49인 사업장은 2년 유예, 5인 미만은 사업장 제외)가 있어 법이 당장 실행되더라도 실효성이 없을 거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강은미 의원은 “매년 같은 유형의 후진적 산재가 반복되고 있다”면서 “정부의 산재사망사고 감축 정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점검과 기업측의 안전 의무를 지도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학동 참사’ 현장검증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동구 학동 4구역 재개발 구역 내 철거건물 붕괴 현장에서 지난 27일 법원의 현장검증이 열렸다. 불법 재하도급 업체 대표 등이 재판부에 사고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무릎 통증 호소 재소자 외래 진료 6개월 넘도록 불허 교도소 배상 의무... 1900여만원 지급 판결

무릎 통증을 호소하는 재소자의 외래 진료를 6개월이 넘도록 허가하지 않는 등 적절한 치료 조치를 소홀히 한 교도소가 수천만원을 배상할 처지에 놓였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 1부(부장판사 채승원)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국가는 A씨에게 위자료 500만원 등 1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8월 순천교도소에서 운동을 하다 무릎을 다친 뒤 통증을 호소했음에도 교도

소속이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고 방치해 고통과 수술 지연으로 인한 후유증을 겪게 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8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었다.

A씨는 무릎 통증을 호소했지만 교도소측은 6개월이 넘도록 외래진료를 허가하지 않았고 2017년 십자인대 파열 등으로 수술이 필요하다는 외부 병원의 진단을 받았는데도 3개월 동안 수술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들어 교도소측이 제 때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고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교도소측이 A씨에 대한 적절한 치료의

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로 인한 A씨의 전방십자인대파열 등 증상이 심화됐을 개연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교도소측이 A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A씨에 대한 인권침해사실을 인정하고 수용자들이 적절한 의료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권고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등도 반영됐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운동시간에 구보하다 주의를 소홀히해 받을 배당한 A씨 과실과 즉구를 즐긴 A씨 생활태도 등도 증세를 악화시키는 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 직후 교도소에서 촬영한 엑스레이로는 이상 소견이 없었던 점을 들어 손해배상책임 범위를 1심(80%)보다 낮은 70%로 제한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부동산중개법인 한국토지부동산

강력추천! 투자가치 100% 확신!

다세대빌라

(북구 운암동)

- 대 지 : 364 m²
- 건 물 : 411 m²
- 층 수 : 3층
- 세대수 : 6세대
- 평 형 : 24평형

매매가 : 540,000,000원

상담 010-3733-3933